



기업 시행 가이드 2026 전자근로계약

시행령 337/2025/ND-CP 호 · 시행규칙 08/2026/TT-BNV 호 기준 업데이트

국가 전자근로계약 플랫폼 2026 년 7 월 1 일부터 운영

목 차

1. 전자근로계약 도입을 위한 준비 절차
2. 전자근로계약 1 건의 체결 절차
3. 근로자를 위한 VNeID 무료 전자서명
4. 전자근로계약 체결은 의무인가? 누가 체결할 수 있는가?
5. 내무부 전자근로계약 플랫폼과 VNeID 계정
6. 전자근로계약 식별코드 (ID)
7. 종이 · 전자 계약 전환 ; 변경 , 일시중지 , 종료
8. 플랫폼을 통한 노동보고 의무와 데이터 보관
9. eContract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 체크리스트

1. 기업의 전자근로계약 도입 준비 절차

1	eContract 공급업체 선정	데이터 메시지 인증에 관한 신뢰서비스 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내무부가 공표하는 플랫폼 연계 적격 업체 명단에 등재된 전자계약 (eContract)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현재까지 내무부가 완전한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기업은 시행령 337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기업용 전자서명 구비	근로자와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정대표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의 전자서명을 등록합니다.
3	근로자용 전자서명 준비	근로자가 2 단계 VNeID 전자신원인증 계정을 개설하고 전자서명을 구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제 3 부 - 근로자를 위한 VNeID 무료 전자서명 참조).
4	플랫폼 계정 등록	기업은 기관용 전자신원인증 계정 (기관 VNeID) 으로 내무부 전자근로계약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계약을 조회 · 관리하고 노동보고를 수행합니다. 유의 : 플랫폼은 조회 · 보고를 위한 곳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5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화	기업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규정에 맞게 검토 · 갱신 · 표준화한 후, eContract 공급업체에 전달하여 공통 전자계약 양식을 생성합니다.
6	내부 절차 수립	계약 생성, 전자서명, ID 발급 관리, 보관 및 조회 등 각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며, 인사팀과 법무팀을 교육하여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2. 전자근로계약 1 건의 체결 절차

1	계약 작성	기업은 eContract 시스템에 근로자 정보, 사용자 정보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근로계약을 생성한 후,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내용을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당사자 신원 인증	기업의 권한 있는 자와 근로자는 시스템 안내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인증 (전자신원인증) 하여, 서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합니다.
3	당사자 전자서명 및 타임스탬프 부여	기업의 권한 있는 자와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계약에 전자서명하며 (근로자는 VNeID / 전자서명으로 서명), 전자서명에는 타임스탬프가 부여됩니다. 마지막 당사자가 서명한 시점이 계약 효력의 기산점입니다.
4	공급업체 인증	eContract 공급업체는 계약을 플랫폼에 전송하기 전에 인증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이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5	ID 발급 및 계약 수령	공급업체가 24 시간 이내에 계약을 내무부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ID 코드를 발급받으며, 이후 기업과 근로자는 ID 가 부여된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6	보관 및 조회	기업과 근로자는 필요 시 플랫폼 및 공급업체 시스템에서 ID 가 부여된 계약을 조회·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계약을 플랫폼에 업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근로자를 위한 VNeID 무료 전자서명

VNeID 개인 전자서명
VNPT SmartCA PS0(시민) 패키지 12
개월 무료

- 근로자는 VNeID 앱에서 직접 무료 개인 전자서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각자 별도로 전자서명을 구매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서 바로 서명하며 , USB 토큰이 필요 없습니다 .
- 기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전자근로계약 체결에 대비해야 합니다 . 2 단계 VNeID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VNeID 등록 절차

- 1 VNeID 앱 실행 (2 단계 인증 완료 계정).
- 2 “기타 서비스” 이동
→ “인증서/전자서명 서비스” .
- 3 공급업체 VNPT SmartCA 선택 후 passcode 입력 .
- 4 서비스 약관 동의 , 개인정보 확인 .
- 5 “SmartCA PS0(시민)” 패키지 선택
- 12 개월 무료 .
- 6 서명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활성화를 완료 .

근거 : 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는 전자근로계약 체결의 필수 요건입니다(시행령 337/2025/NĐ-CP 호 제6 조 제2 항 다목 및 제4 항).

4. 전자근로계약 체결은 의무인가 ?

4.1. 의무는 아니지만 - 사용한다면 기준을 따라야 함

기업은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의무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전자근로계약 사용을 권장할 뿐입니다.

근거 : 2019 년 노동법 제 14 조 제 1 항 -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시행령 337 호 제 4 조 제 3 항 - “ 종이 서면 근로계약을 대체하는 전자근로계약의 사용을 권장한다...” .

유의할 새 요점 : “ 의무 아님 ” 은 형식 선택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 기업이 일단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선택하면 , 2026 년 7 월 1 일부터 해당 계약은 반드시 플랫폼에 연계된 eContract 를 거쳐 ID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 이는 더 이상 임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4. 누가 체결할 수 있는가 ? 어떤 기업 , 어떤 직책 ?

기업 형태나 근로자 직책에 제한이 없으며 , 시행령 337 호 제 6 조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서명자가 노동법 제 18 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 경우 모든 기업이 모든 직책의 근로자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주체	충족해야 할 요건 (시행령 337 호 제 6 조 제 2 항)
사용자	다음 중 하나 보유 : 설립결정서 / 기업등록증 / 투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등록증 ; 그리고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서 .
근로자 (모든 직책)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신분증 / 전자신분증 / 2 단계 전자신원인증 계정 / 유효한 여권 (외국인 : 비자 또는 비자면제 서류 포함) .
공통 기술 요건	전자서명 보유 및 전자거래법에 따른 타임스탬프 서비스 사용 (제 6 조 제 2 항 다목) .

인사 담당자 팁 : 근로자는 서명을 위해 전자서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전자서명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 시장에는 1 회용 전자서명 방식이 있어 근로자가 장기 등록 없이 즉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

5. 내무부 플랫폼과 VNeID 계정

5.1. VNeID 전자신원인증 계정으로 로그인 (시행규칙 08 호 제 7 조)

- 근로자 : 개인 전자신원인증 계정 (개인 VNeID) 사용 .
- 사용자가 기관인 경우 : 기관 VNeID 사용 ; 등록이 불가능하면 내무부에 플랫폼 접속 계정 발급을 요청 .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 개인 VNeID 사용 .

5.2. 플랫폼의 4 개 계정 그룹 (시행규칙 08 호 제 16 조)

계정 그룹	수행 가능 업무
관리 (국가기관)	내무부 , 베트남노동총연맹 , 각 성 내무국 , 공단 / 경제구역 /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 — 내무부가 발급하며 ,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 .
사용자	자사 전자근로계약 정보의 활용 · 공유 ; 플랫폼을 통한 노동보고 수행 .
근로자	본인의 전자근로계약 정보의 활용 · 공유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국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배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 .

플랫폼은 내무부가 운영하며 주소는 hopdonglaodong.moha.gov.vn · 인프라는 국가데이터센터에 소재 .

6. 전자계약 식별코드 - ID(시행규칙 08 호 제 5 조)

각 전자근로계약에는 고유한 ID 코드가 부여되며 , **문자 1 자 + 숫자 12 자**로 구성됩니다 :

구성 요소	기호	의미
문자 (1 자)	A	2026 년 7 월 1 일부터 적격 eContract 를 통해 체결된 전자근로계약 .
	B	종이 서면 근로계약에서 전환된 전자근로계약 .
	C	2026 년 7 월 1 일 이전에 체결된 전자근로계약 .
앞 2 자리 숫자	예 : 26	플랫폼이 ID 를 발급한 연도의 끝 두 자리 (2026 → “26”).
뒤 10 자리 숫자	무작위	시스템이 무작위로 부여하는 자연수 배열 .

▶ **ID 는 1 회 부여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 변경 · 추가 · 일시중지 · 종료되더라도 동일하며 , 부록 및 통지는 같은 ID 로 연결됩니다 (시행규칙 08 호 제 4 조 제 2 항) .

▪ **플랫폼은 ID 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서명 / 타임스탬프 / 인증 누락 , 신원인증 오류) - 시행규칙 08 호 제 6 조 제 5 항 .

7. 종이 · 전자 계약 전환 및 변경

7.1. 종이 계약의 전자 전환 (시행령 337 호 제 8 조)

- 종이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전자신원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아야 합니다 ;
- 전자본은 기업의 권한 있는 자가 원본과 일치함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 이후 ID(“B” 유형) 가 부여됩니다 ;
- 다음을 첨부 : **전환 이력** (시행규칙 08 호 제 6 조 제 1 항 나목) : 시스템 , 수행자 , 시간 , 파일 형식 , 전자서명 + 타임스탬프 , 종이 원본과의 일치 확인 상태 .

7.2. 변경 , 추가 , 일시중지 , 종료 (시행령 337 호 제 9 조)

구분	처리 방법
이미 전자로 체결한 계약	변경 / 일시중지 / 종료는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와 동일하게 처리 (제 5·6·7 조),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제외 .
종이로 체결한 계약	먼저 전자근로계약으로 전환한 후 (제 8 조 제 1 항), 변경 / 일시중지 / 종료를 진행해야 함 .
부록 및 통지	일관성 · 완전성 · 이력 추적을 보장하기 위해 원 계약과 동일한 ID 로 연결 (제 9 조 제 3 항).

8. 노동보고 의무와 데이터 보관

8.1. 노동 사용／변동 현황 보고

사용자는 노동 변동 현황 보고를 (시행령 145/2020/NĐ-CP 호 제 4 조 제 2 항 , 2025 년 개정 기준) 플랫폼에서 직접 전자근로계약에 대해 수행합니다 (시행규칙 08 호 제 19 조 제 2 항). eContract 는 보고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령 337 호 제 6 조 제 1 항 아목).

8.2. 데이터 보관

보관 장소	보관 기간
전자근로계약 플랫폼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0 년 . 연속된 다수 계약의 경우 (노동법 제 20 조) →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산정 (시행규칙 08 호 제 18 조 제 3 항).
공급업체 시스템	서비스 계약에 따르되 , 플랫폼 보관 기간 이상이어야 함 (시행규칙 08 호 제 6 조 제 3 항).
기업 내부	사용자가 보관 · 보안하며 완전성과 조회 가능성을 보장 (시행령 337 호 제 19 조 제 2 항 나목).

보안 및 개인정보 : 기업은 보안 위험 , 위조 , 오류 또는 무단 접근을 발견한 즉시 플랫폼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령 337 호 제 19 조 제 2 항 마목 · 바목).

9. eContract 공급업체 선정 및 체크리스트

제 1 원칙 : 내무부가 공표하는 **연계 적격 업체 명단에 등재된** eContract 공급업체만 선정하십시오 (변경 시 24 시간 이내에 플랫폼 안내 페이지에서 갱신) — 시행령 337 호 제 22 조 및 시행규칙 08 호 제 21 조 .

eContract 공급업체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 ☐ 내무부가 공표하는 플랫폼 **연계 적격 업체**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가 .
- ☐ 신뢰서비스 사업 허가 보유 (데이터 메시지 인증 서비스) - 제 6 조 제 3 항 다목 .
- ☐ 신원확인 및 인증 솔루션 (**eKYC / 생체인식**) 보유 - 제 6 조 제 3 항 나목 .
- ☐ 전자서명 및 서명 · 타임스탬프 검증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 제 6 조 제 1 항 가목 .
- ☐ 전환 기능 보유 (전자 · 종이 근로계약); 노동보고 지원 ; 보관 , 보안 , 정보보호 .

9. 적격 eContract 의 12 개 요건

eContract 를 통해 체결하는 경우 , eContract 시스템은 12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령 337 호 제 6 조 제 1 항):

1. 전자서명 및 서명 검증 소프트웨어

2. 보안 , 정보보호 및 장애 복구

3. 데이터 보관 , 완전성 및 조회

4. 정확한 주체 식별 및 신원 인증

5. 당사자 동의 확인

6. ID 부여 전송 전 계약 인증

7. 전자거래 계정 (전자거래법 제 46 조)

8. 노동 사용 현황 보고 지원

9. 집계 , 통계 , 정기 / 수시 보고

10. 플랫폼과의 표준 API 연계

11. 사이버보안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12. 전자 · 종이 근로계약 간 전환

법적 근거

전자근로계약은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체결되며 종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령 337 호 제 3 조 제 1 항).
세 개의 법령이 중심 축입니다 :

법령	내용	효력 / 시점
2019 년 노동법 (45/2019/QH14)	제 14 조 :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인정	시행 중
시행령 337/2025/ND-CP 호	전자근로계약의 체결 · 이행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행일 2026 년 1 월 1 일
시행규칙 08/2026/TT-BNV 호	안내 : ID 발급 , 플랫폼 계정 , eContract 연계 , 보고 , 보관	시행일 2026 년 7 월 1 일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가 항상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 및 전문 법률 서비스를 위해 지금 연락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 사건

상시 법률 자문
인수합병 (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 번지 A&T
빌딩 11 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
law.com



웹사이트

www.dedica-
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